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상위법과 상치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(안제12조)
- 기금운용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다음 회계년도 6월말로 조정(안제12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상의 기금결산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지방자치법

제125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99. 8. 31]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38조 (세입·세출결산의 제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2000·1·12]

□ 파주시 각종 기금운용관리 근거법규

○ 체육진흥기금

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
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의 조성목표는 10억원으로 한다. 다만,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 <개정 97.1.15>

②기금은 1999년까지 조성하되, 재원은 파주시 일반회계출연금으로 한다.

○ 노인복지기금

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“기금”이라 함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.

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파주시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

○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

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

제6조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파주시의 일반회계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○ 재해대책기금

자연재해대책법

- 제63조(재해대책기금의 적립) ①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○ 재난관리기금

재난관리법

- 제56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제57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) ①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,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- ②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'시·도지사의 권한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시·군·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99.1.29>

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등

□ 파주시 각종 기금결산 현황

(단위:천원)

연번	구 분	근거법규	제 원	목표액	현재액	비 고
1	체육진흥 기 금	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	○ 일반회계출연금	1,000,000	767,647	
2	노인복지 기 금	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	○ 파주시의출연금 ○ 기금운용수익금 ○ 기타수입금		526,511	
3	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	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지급조례	○ 일반회계출연금 ○ 기금의운용으로 발생되는수익금 ○ 기타수입금		880,073	
4	재해대책 기 금	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	○ 매년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수입결산 액의 평균년액의 8/1000에 해당하는금액		88,401	
5	재난관리 기 금	○ 재난관리법 제56조~제58조 ○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	○ 매년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수입결산 액의 평균년액의 2/1000에 해당하는금액 ○ 기금의운용수익금 ○ 기타수입금등		78,554	
계	5개기금				2,341,186	